

# 보도설명자료 (20. 10. 07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발전공기업이 추진하는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공공기관 투자비가 500억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추진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며, 예타 분석시 B/C 지수는 경제·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것으로 순수한 사업 수익성과는 다름 (KBS, 세계일보 10.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투자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함
- ◇ 예타 분석시 B/C 지수는 경제·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것으로, 순수한 사업 수익성과는 다름
- ◇ 신재생 사업을 비롯해 상당수 인프라 사업이 B/C 지수가 1 미만 이더라도 정책적 타당성, 수익성이 높아 예타를 통과한 사례 다수
- ◇ 10.7일 KBS <“태양광·풍력 사업 난개발” 국정감사에서 ‘지적’>, 세계일보 <野, 국감서 신재생에너지 맹공...“공기업 경영악화 우려”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## 1. 기사내용

- 발전공기업들이 경제성이 낮은 해상풍력 사업에 무분별하게 진출해 경영악화가 심화될 우려
- 에너지공기업이 추진중인 해상풍력 사업 총 34개(전체 사업비 53조 6,686억원) 중 경제성 조사 대상은 7개 사업에 불과
  - 특히 7개 사업 중 2건은 비용 대비 편익 비율(B/C)이 1 미만으로 경제성이 떨어짐

- 에너지 공기업 대부분 수십조원대 부채 및 영업적자 기록 등 열악한 경영상황인데,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중

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총사업비가 1,0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함
  - \* 근거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(예산의 편성)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3(예비타당성조사)
- 예타 조사에서는 ① B/C 지수를 통한 사회적 비용·편익 분석, ② 환경성,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정책적 타당성, ③ 운영수입의 현금흐름을 평가하는 수익성(PI; Profitability Index)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업 타당성을 판단(AHP > 0.5 이상)하고 있으며,
  - \* AHP(Analytic Hierarchy Process): 계층화 분석법
- 예타 조사에서 적용하는 B/C 지수는 ‘사회적 비용과 편익’을 산정해 ‘공공성’을 평가하는 것으로, 순수한 ‘사업 수익성’과는 다름
  - \* 사업 수익성은 예타 조사시 운영수입의 현금흐름을 평가하는 수익성 지수(PI)로 평가
-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비롯해 상당수 인프라 사업이 B/C 지수가 1 미만 이더라도 정책적 타당성, 수익성이 높아 AHP가 기준치(0.5) 이상으로 예타를 통과한 사례가 다수임
  - 예를 들어, 기사에서 언급된 전남 신안 해상풍력의 경우, 예타 조사 결과 B/C 지수는 0.53에 불과하나 사업 수익성(PI : 1.3)이 높아 종합 사업타당성(AHP : 0.521)을 인정받은 바 있음
  - ※ 문의 : 재생에너지산업과 윤성혁 과장(044-203-5370) / 김혜원 사무관(5372)